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3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민형배·진성준·양이원영

신정훈 · 윤준병 · 정필모

김두관 · 강준현 · 김정호

최강욱 · 김남국 · 황운하

이용빈 · 이규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권의 권력유지에 활용된 국정원, 기무사 등 기존 권력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입니다.

검찰은 주권자가 선출한 권력이 아님에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견제장치 없이 독립성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호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려 합니다.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 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사건의 수사 중지권 및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검사장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단일형 위계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검찰은 모든 강력 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 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 할 장치가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습니다.

셋째,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부처 명칭이 청입니다. 총장이라 불리는 기형적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른 정부부처의 처·청과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으로 예우받습니다. 다른 행정 각 부의 외청과 마찬가지로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길입니다.

주요내용

- 가.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나. 검찰총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함(안 제12 조제3항).
- 다.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 중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렬의 직급 용어를 정비하며,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렬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
- 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 마.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 바.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 사.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아.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제47조 삭제, 제49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5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수사, 공소의"를 "공소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한 수사관리"로 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임기는"을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고, 임기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을 "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두며"를 "둘 수 있으며"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를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두며"를 "둘 수 있으며"로, "대통령령으로"를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으로"를 "검찰서기관으로"로, "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을 "검찰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4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26조의2(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8장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34조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제26조의3(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자의 자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 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

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 ③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제26조의4(겸직의 제한)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선 전부터 제1항(「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제26조의5(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환) ①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6(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퇴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 1. 제26조의4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 2.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우대할 수 있다.

제31조 중 "제27조"를 "제26조의3제2항·제27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를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검찰총장의"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로, "검사의 보직을"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차장검사의 임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포함한다)을 들어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검찰총장은"을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으로 한다.

제45조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를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을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및 검찰서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을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 보좌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이나"를 "검찰서기관이나"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3조 앞의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삭제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55조부터 제64조) 및 제9장(제65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

- 제55조(선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제56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선거구)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 제58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

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62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 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 제6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

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제61조(당선인의 결정·통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62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

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검찰청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검찰청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검찰청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검찰청법」 제59조제1항"으로 본다.
-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 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 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검찰청법」 제60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

방의회의원은 지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지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와 「공직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검찰정 검사장 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검찰청법」 제65조"로 본다.
-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 2제1항의 "선거범"에는 "「검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

- 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7항의 "이 법"에는 "「검찰청법」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제63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5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검찰수사서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찰수사서기관은 검찰서기관으로 본다.
- 제3조(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은 검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실시시기 및 임기의 개시) 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26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어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에 임명될 사람의 임기는 2026년 7월 1

일부터 개시한다.

제5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 및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 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3항,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어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에 임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검찰사무·마약수사"를 "검찰"로 한다.

②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사무직렬"을 각각 "등기사무직렬 또는 검찰직렬"로한다.

③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등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u>범죄수사, 공소의</u> 제기 및	1. <u>공소의</u>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u>다</u>	<u><단서 삭제></u>
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u>목과 같다.</u>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	<u><삭 제></u>
<u>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u>	
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	
<u>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u>	
<u>죄</u>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u><</u> 삭 제>
<u>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u>	<u><삭 제></u>
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u>는 범죄</u>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	2. <u>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한</u>
<u>찰관리</u> 지휘·감독	<u>수사관리</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검찰총장) ①·② (생 ⁷ 략)
 - ③ 검찰총장의 <u>임기는</u>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6조(직제) ① (생 략)

-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제20조(직제) ①·② (생 략)
 -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u><단서 삭제></u>
제12조(검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고, 임기는
제16조(직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검찰서기관</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직제)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인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 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 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 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 청에 과를 <u>두며</u>,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

<u>검</u>
<u>찰서기관검</u>
찰사무관
<u>.</u>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장검사) ①
<u>있으며,</u>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
사장이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직제) ①
수 있으며
<u>사항은 정원의 범위</u>
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②
둘 수 있으며

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u>대</u>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장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판·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생략)

<신 설>

<신 설>

<u>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u>
<u>검사장이</u>
③
정
원의 범위에서 지방검찰청 검사
장이
<u>4</u>
검찰
<u> </u>
<u>검찰서기관·정보통신서기</u>
<u>관·검찰사무관</u>
ⓒ /원레기 기수)
⑤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6조의2(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선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8장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
는 4년으로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3 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제26조의3(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자의 자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 ③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둘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신 설>

제26조의4(겸직의 제한) 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제27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선 전부터 제1항(「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 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 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6조의5(지방검찰청검사장의소환)① 주민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다.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 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 명한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6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 를 합산한다.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생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현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 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6(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퇴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제26조의4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이 경우 대학교수 등 분 야별 전문가를 우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의3제2항·제27조-----

략)

-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u>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u> 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 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 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④ (생 략)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보직을 제청한다.

<신 설>

② (생략)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 (<u>검찰총장은</u>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

행과 같음)
②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
무관으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u>해</u>
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u>제23조제1항에 따른 차장</u>
검사의 임명을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
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
청 검사장의 의견을 포함한다)
을 들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u>\odolor</u>

사를 한다.

② ~ ⑦ (생 략)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제45조(검찰청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 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 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 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 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 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 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 제46조(검찰서기관 등의 직무) ① 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 한 사무

2. ~ 4. (생략)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 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 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② ~ ⑦ (현행과 같음)

-----검찰서 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및 검찰서기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 보좌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범죄수사를 한다.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 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 | <삭 제> 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 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 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 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 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 <삭 제> 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 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 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 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 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 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③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

한다.

-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 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 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
-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 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 법경찰관의 직무
-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 원: 「형사소송법」 제245조 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 의 직무

략)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생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현 행과 같음)

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다.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 저 워)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 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 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 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 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 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 기보,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 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 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삭 제>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 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	서기]관이	나-	
								-
								-
								-
제	49조	:(통역	공무.	원	및	기술	공그	尸
	원)	① (ক্	변행과	· 같	음)			
	2							
								-
							<u><ra>t</ra></u>	간
	서 ?	삭제>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 <삭 제> 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 독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 | <삭 제> 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 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 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제8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 제55조(선출) 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제56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지방 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사 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 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

<신 설>

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선거구가 둘 이상의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지정한 시·도선거관리
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57조(선거구) 지방검찰청 검사 장은 해당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제58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 지 등) ① 정당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 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 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 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62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
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
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을 가
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 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6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 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 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 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 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 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 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 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신 설>

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 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61조(당선인의 결정·통지)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 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제62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

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 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 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 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 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 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 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 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 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 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 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 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 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 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 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 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 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 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 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검찰청법」 제2 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 때"는 "「검찰청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

 이 발견된 때"로 본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 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검찰청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 다.
-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검찰청법」 제59조제1항" 으로 본다.
-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 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 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 다.

-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 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 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검찰청법」 제60조에 따 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으로 본다.
-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 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 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 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 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의 선 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

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 (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 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 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지방검찰정 검사장 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검찰정 검사장 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 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 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 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 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 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검 찰청법」 제65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 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검 찰청법」 제65조"로 본다.

-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 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 에는 "「검찰청법」 제65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 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 제1항·제2항·제7항의 "이 법" 에는 "「검찰청법」의 지방 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63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
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제64조(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들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 검찰청 검사장 당선인이 추천 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른 위 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 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u><신 설></u> <신 설>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5조(벌칙) 제58조를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